

법안 미비·정부 비협조에...5·18 조사자료 이관 '발목'

5·18 조사 기록물 광주 못 오고 표류 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기록물이 '법안 미비'와 '정부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광주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매장·행불자 등 5월 핵심의혹 규명과 연구를 위해서는 5·18진상조사위가 수집·작성한 원천자료가 5·18기록관, 5·18 기념재단 등 관련 기관이 있는 광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 이관 못했나=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기록물 이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앞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등에게 '자료이관 국회동의안'을 올렸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해 국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올초 대통령실·국무총리 등에 자료 이관 국회동의안 올렸지만 재가 안해

5·18진상조사위 청산팀 오늘 해산되면 이관 작업 담당할 주체도 없어져
관련법 개정안도 지지부진...원천자료 광주 이관 위해 후속조치 서둘러야

는 것이다. 국무총리 전결은 받았으나,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5·18진상조사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5·18 관련 기관·단체에 기록물을 이관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광주 이관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이관 대상 기관이 모호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별도 절차 없이 기록물을 5·18기록관, 5·18기념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소관 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심사를 받는 단계에 그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5·18진상조사위 청산팀까지 해산되고 난 이후 이관 작업을 담당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은 물론 법 개정안에도 5·18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자료 이관 작업에 대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소속돼 있던 국방부에서 도맡아 이관 작업을 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이 경우 이관 시점과 실행력 등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18 후속 연구 차질 우려=5·18 진상규명과 연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이 영구 이관될 경우, 기록물을 처음부터 다시 검수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내용 등에 대한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전국의 중요 기록물들을 관리하므로 5·18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리란 보장도 없으며, 시간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시민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 5·18 진상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할 민간 주도의 후속 진상규명 활동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 5·18 관련 기록연구사는 "광주시 등에 이관된 기록은 5·18 전문 기록관으로서 목록 작성과 내용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쉽지만, 국가기록원 기록물은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며 "자료 번호와 제목만으로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연구 작업도 차질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선대 전 5·18진상조사위원장은 "5·18 피해에 대한 실상이 담긴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해 놓은 만큼, 자료에 대해 외부에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후속 조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민간인 개별 피해부터 암매장, 행불자, 군 상충부 조사 등 미완성 과제들을 지속 조사하기 위해서는 빠른 자료 이관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직원 반복 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2심도 실형

광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여직원을 반복 추행한 중학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던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새 여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와 회식장소 등에서 여직원과 컵차를 끼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

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고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여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반려견 걷어차고 집어던져 학대한 주인 고발

"다리뼈 탈구되고 안면 큰 상처"...동물보호단체, 무안경찰에

동물보호단체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학대한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 행동 카라(KARA)'가 무안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이 남성이 지난 8월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수차례 바닥과 철문에 집어던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해당 남성의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을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폭행 당한 반려견은 양쪽 다리뼈가 탈구되고 안면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이 남성이 지난해 시장에서 해당 반려견을 사들여 키우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반려견을 구조하고 소유권을 인계받아 카라더봄센터에서 보호중이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박홍근 의원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연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웨딩의 거리' 이전 주차 안됩니다. 광주시 동구 웨딩의 거리 공영주차장이 지난 23일부터 폐지된 가운데 25일 오후 해당 주차장 지역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채업자에 돈 빌리면서 145명의 휴대전화 번호 넘겼다"

유출 대학생 부모 "협박도 받아" 광주 한 대학교, 수사 의뢰키로

광주지역 한 대학교가 재학생 14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9월 25일자 광주일보 6면)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5일 해당 대학교에 따르면 자체 조사결과 재학생 A양이 사채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사채를 빌리면서 사채업자가 요구하

자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측은 "A양의 가족을 통해 A양이 사채업자에게 3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가족 등의 전화번호 145개를 넘겼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A양 부모는 학교측과 통화에서 "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번호로 국제발신문자를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모두 상환한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양 부모는 A양에게 경찰에 직접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번호 유출 사실은 최근 학교 재학생과 교수들 17명에게 "A양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국제발신문자가 무더기 전송되면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문자를 받은 학생·교직원 17명에게 국제발신문자를 받을 경우 확인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면서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2시간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측은 고발대상에 A양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